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명 "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설치조례"를 "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"로 한다.

제1조중 "충청북도정신질환자요양소(이하"요양소"라한다)"를 "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(이하"요양병원"이라한다)"으로 한다.

제2조 내지 제3조 및 제5조1항중 "요양소"를 "요양병원"으로 한다.

제2조중 "운천동 636-5번지"를 "사직동 554-6번지"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용료및진료비) 사용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수가에 준하여 징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